

대학원 마이크로전공 신설 및 운영

2026. 9. 대학원행정실

1. 도입 배경 및 기대 효과

- 가. 2025학년도 2학기부터 학부 교육과정에 마이크로전공 제도가 시행 예정임에 따라, 대학원 교육과정에도 유연학사제도의 일환으로 마이크로전공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됨
- 나. 학부의 마이크로전공 제도를 대학원 석사과정에 대해서도 확대운영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함양한 융복합적 전문 미래인재를 양성하고자 함
- 다. BK21사업 등 각종 대학원 재정지원사업에 있어 대학원 학사제도의 혁신 운영 사례로 긍정 평가를 기대할 수 있음

2. 관련 규정

대학원 학칙 제24조의2(마이크로전공)

- ① 대학원생의 융복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에 마이크로전공을 둘 수 있다.
- ② 마이크로전공의 개설 및 이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3. 적용 대상

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,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

4. 세부 운영(안)

- 가. 이수학점: **6~12학점** (마이크로전공 신청 이전 취득한 학점도 인정)
 - ※ 마이크로전공 교육과정(설정학점)은 이수학점의 2배 이내로 편성
- 나. 신청 주체: 각 학과
 - ※ 2개 이상의 학과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 주관학과에서 신청
- 다. 증명서 표기: 마이크로전공을 이수한 경우 졸업 시 **성적증명서에 표기**
- 라. 신청 대상: 1학기 이상 정규등록 한 **석사 학위과정생, 박사학위과정생 및 통합과정생** 대상으로 시행
- 마. 신청 시기: 재학 중 부전공 신청 시기와 같은 시기(4월 초순 또는 10월 초순, 별도 안내)
- 바. 기타 사항
 - 1) 학생은 본인 소속과 무관하게 모든 마이크로전공 신청 가능하나, 전공 학과의 수료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에는 마이크로전공 신청 불가
 - 2) 학생 한 명이 재학 중 최대 1개의 마이크로전공 신청 및 이수 가능
 - 3) 주전공/부전공 교과목 간 중복 인정 가능
 - 4) 마이크로전공 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졸업 가능
 - 5) 전문·특수대학원은 학칙에 따라 마이크로전공을 각 대학원별로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음